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 3 배에서 ± 2.5 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pm 30\%$ 에서 $\pm 50\%$ 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